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뿌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일 것
 2.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근로시간, 근속연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근로·복지환경을 갖춘 기업일 것
 3.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적정하고 뿌리기술 또는 뿌리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공인(公認)된 인증·실적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수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기업일 것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중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를 각각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뿌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u>

<신 설>

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
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일
것

2.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근
로시간, 근속연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근로·복지환경을 갖춘 기업
일 것

3.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
자 규모가 적정하고 뿌리기술
또는 뿌리기술로 생산되는 제
품에 대해 공인(公認)된 인증
· 실적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
유하고 있는 등 우수한 성장
역량을 보유한 기업일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
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1. (생략) 가.·나.·다. (생략) 2. (생략)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u>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u>로 지정 또는 선정 받은 경우 나.·다. (생략) 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u>뿌리기술 명가 및 진흥센터</u>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u>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u> -----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u>뿌리기업</u> 명가, 일하기 좋은 <u>뿌리기업</u> 및 <u>진흥센터</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906